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1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- (1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(위원장)을 포함하여 주관부서 팀장, 해당 사업팀 팀장 또는 임원, 경영개선팀장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현장소장,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

- (1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(2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3)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- (4) 사안이 중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
다.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

- (1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(2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업체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종료 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- ①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여부
 - ② 하자보수책임 부담전가여부
 -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
- (3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당사 및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페널티에 관해 심의하여야 한다.
- (4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당사와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관련 각종 분쟁에 관해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(6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7) 하도급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 선정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.

(8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위원회 회부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<주요 심의사항>

구 분	세부내용	비 고
일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도급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제·개정 · 기타 주관부서에서 상정한 사항 	
하도급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· 일정금액 이상 하도급계약 적법성 사후검증 · 위반소지 자진 시정 및 위반행위 임직원 제재 심의 	인사위원회 회부
협력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사 및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페널티 ·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 · 협력업체 등록·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·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· 협력업체 평가 	포상/제재

라. 심의 문서 등 보관

(1) 하도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